

부산지방법원 2021. 8. 11 선고 2020가합5345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
담당변호사 김수정

피 고 1. A
2. B 주식회사
변 론 종 결 2021. 7. 21.
판 결 선 고 2021. 8. 11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C 주식회사와 피고 A 사이에 2020. 1. 2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A은 C 주식회사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와 2020. 1. 8. 접수 제1668호로 마친
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다. C 주식회사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2020. 4. 14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라. 피고 B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와 2020. 4. 16. 접수 제24735호로 마친
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과 같다.

2. 가.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나.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

재판장 판사 조정민, 판사 강윤진, 판사 전유상

별지